

밀양시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건설사업) 특수직 채용 공고문

채용 개요

- ☐ 채용인원 : 기간제근로자 2명
- ☐ 근무기간 : 채용예정일(2022.6월말)부터 2022.12.31.까지
 - ※ 밀양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SWM) 사업 기간 : '22.1월~'22.12월
 - ※ 프로젝트(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나, 2023년까지 연장될 경우 근평 결과에 따라 종료 전 계약연장 가능
 - ※ 채용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근무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밀양현대화사업팀(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92 KT밀양사옥 4층) 및 사업현장(밀양시) 일원
- ☐ 채용직무 : 기술관리(건설사업)
 - ※ 직무 세부내용은 붙임 1. 직무기술서 참조
- ☐ 근무형태 : 주 5일, 전일제(1일 8시간 근로)
- ☐ 보수수준 : 초임 총연봉 30,968천원~38,963천원 수준 내에서 개인별 차등
 - * 총연봉(기본연봉(26,141천원), 성과급 등)은 공사 연봉관련 제규정에 의하여 개인별로 산정하여 상이할 수 있음(성과급은 입사년도 소속 부서(부)의 평가 지급율 적용)
- ☐ 복지후생: 공사 관련규정 등에 따라 지원(4대보험, 건강진단, 숙소 지원 등)
- ☐ 기타 : 1년 이상 재직시 내부기준에 의거 실무직(무기계약직) 채용시 우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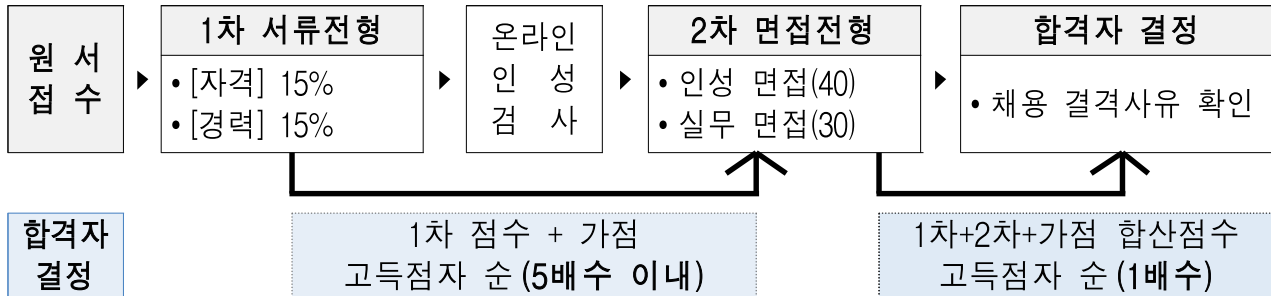
지원 자격

-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2 참조)
- ☐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 주요 수행업무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기술관리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감독,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 등 관련업무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민원처리 업무 등

전형절차/방법



1.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2.05.26.(목) ~ '22.06.03.(금) 18:00까지

- ※ 입사지원시스템은 '22.05.26.(목)부터 입력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00에 자동 종료됩니다. 입사지원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가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서를 최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 마감일 전까지는 지원서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제출한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제출을 완료하여야 입사 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생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접수 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 입사지원시스템 주소(URL) : <https://k-water.recruiter.co.kr>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가점 등 합격결정과 관련있는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 서류 사본을 입사지원시스템에 첨부·제출(단순 사진촬영 및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거치며, 허위 작성, 증빙서류의 위·변조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합격 취소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① [필수] 자기소개서
 - * 입사지원시스템 지원서 제출시 작성
- ② [자격]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③ [경력]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세부 수행직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함
 - * 입사지원시스템 지원서 제출시 경력기술서에 해당경력 작성 필수
 - * 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만 인정 (미리보기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 ④ [결격 확인]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병역면제자 포함 남성 지원자 필수 제출)
- ⑤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⑥ [우대]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 불가
- ⑦ [우대] 관련 학교(학과 명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해당자에 한함, 사본첨부)
 -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에 붙임3-3에 명시된 단어들이 명시된 학과만 관련학과로 인정(고등학교 이상)

2. 1차전형 : 서류심사

-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동점자 전원 선발)
-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 서류심사 : 자격증, 경력 및 가점 합계

평가방법(배점)

○ **【자격】(15%)**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건설기술(공통, 토목, 기계, 전기·전자) 관련 붙임3-1 자격증 분류표에 열거된 자격에 한해 인정

자 격 증	점 수
기사급 자격증 이상	15점
산업기사급 자격증	10점
기능사급 자격증	5점
자격증 미소지자	0점

○ **【경력】(15%)**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건설기술 관련 협회(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전기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공인 경력증명서를 직무(전문분야), 기술(전문분야), 직무(참여분야)로 확인

구분	관련분야
건설기술인 협회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시공), 기계(건설기계), 기계(용접), 기계(일반기계), 전기·전자(건축전기설비), 전기·전자(산업계측제어)
엔지니어링협회	건설부문(상하수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기계부문(용접),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부문(전자전자응용)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상하수도, 정수시설)

1,460일 이상	1,095일 이상	730일 이상	730일 미만
15점	10점	5점	0점

○ **우대사항** : 서류만점(30점)에 대해 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 법률상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5%, 10%)
- 특별 가점 : 장애인(10%), 건설기술 관련학과*(5%)
- * [붙임3-3] 건설기술관련 가점 인정 관련학과

※ 가점은 서류전형 만점범위 내에서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되 법률상 가점은 중복부여

○ **선발** : 서류·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포기시 차순위자 면접시행

3. 온라인 인성검사

☐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

※ 인성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검사내용 : 성실성, 대인 관계성 등 인성 검사

※ 결과는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해당 인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대상에서 제외

4. 2차전형 : 면접전형

☐ 전형구성

평가방법(배점)

- 【인성면접】(40%) 및 【실무면접】(30%) 실시
- 【우대사항】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 법률상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5%, 10%)

5.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기준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전형) 및 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 동점자 처리 : 아래 순위별 고득점자

- ① 취업지원대상자(10%가점 > 5%가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④ 서류심사

전형 일정(예정)

※ 해당 일정은 예정일이며,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자	내 용
○ 원서접수	'22.05.26.~06.03.	○ 인터넷 접수
○ 1차 전형 (서류심사) 발표	'22.06.09.	○ 개별통보(인성검사 및 면접일정 통지)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별도 통보	○ 미응시자는 면접포기 간주
○ 2차 전형 (면접평가) 실시	'22.06.15.	○ 인성 및 실무면접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22.06.16.	○ 개별통보

우대요건

구 분	가 점	제출서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첨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 정도 무관	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0%	장애인증명서 사본 첨부
건설기술 관련학과(붙임3-3)	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증명서 사본 첨부

※ 관련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 안내 부분 반드시 확인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에 따름

기타 사항

-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지원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원조사 부적격, 기타 채용 자격요건 미구비자 등은 최종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채용에서 제외됩니다.
 -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발급된 원본서류에 한하며, 증명되지 않은 사항은 허위로 간주됨.
-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취소, 채용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지원서 최종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의 낮은 해상도, 문서 잘림 등의 사유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첨부 서류를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오타, 착오 등으로 지원서에 입력을 잘못된 경우

□ 지원서 접수시 스캔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4 양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원기관으로 반환 요청 시 원본 서류는 우편을 통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

□ 처우 및 근무조건은 입사일 현재 K-water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K-water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 채용 기간에는 긴급한 문의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본부 채용담당자

(☎055-268-7111)

※ 답변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채용 청탁 금지 안내 >

- ◆ K-water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 전형에서 제외하고, 합격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 신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사실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본부장

- 붙임 : 1. 직무기술서 1부.
2. 채용 결격사유 1부.
3. 가점 인정 기준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1]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기술관리		
직무환경	근무예정지	모집 인원	근무 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본부 밀양현대화사업팀	2명	경상남도 밀양시
직무내용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감독, 안전관리 및 사업 관리 등 관련업무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민원처리 업무 등		
필요능력	- 필요지식 : 건설기술(공통, 토목, 기계, 전기, 전자통신)분야의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 사업관리 분야의 관련 법령,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지식 - 필요기술 : 건설기술(공통, 토목, 기계, 전기, 전자통신)분야의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 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도면, 시방, 내역 등의 분석기술, 현장여건 변화를 고려한 관련 설계서의 변경사항 도출 및 검토 기술 - 직무수행태도 : 전략적 사고, 분석적 태도, 조정능력, 공정성, 설득력, 협업적 태도, 창의적 사고, 합리적 사고, 정확성, 윤리의식 등 -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필요자격	- 자격사항 : [붙임 3-1] 가점 인정기준 중 국가자격증 분류표 참조		

[붙임 2]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붙임 3] 가점 인정 기준

[붙임 3-1] 가점 인증 국가자격증 분류표 (기술관리)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첨부)

* 보유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함

직 종	구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	공통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1급
	토목	측량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전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기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특수용접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배관기능사	배관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설비보전기능사		설비보전기사
				일반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전자 통신	무선설비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방송통신기능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붙임 3-2] 건설기술관련 가점 인정 경력 및 심사기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해당경력이 있는 경우, 입사지원시스템 지원서 제출시 경력기술서 작성 필수
- * 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만 인정

인정 경력증명서	인정 경력 심사 기준 【직무분야(전문분야), 기술분야(전문분야), 직무분야(참여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시공) 기계(건설기계) 기계(용접) 기계(일반기계) 전기·전자(건축전기설비) 전기·전자(산업계측제어)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건설부문(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기계부문(용접)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전력기술인 경력증명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전기(상하수도,정수시설)

* 심사기준에 명시된 분야에 대해서만 건설기술분야 가점으로 인정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문서확인번호 : 8774-9634-9282-0509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토목 건축	토질·지질 토목구조			
	특급 초급	초급 초급			특급 초급

Page : 1 /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쪽 중 제1쪽)

Page : 11 / 13
(3쪽 중 제2쪽)

③ 1. 기술경력

(책임장도의 *는 보정계수가 적용된 경력사항임)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발주자	공사종류 공법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책임정도	비고
	공사(용역)개요			공사(용역)금액(백만원)	
2018. 12. 21	영천병원 본관2층 증축 및 부대공사 중 도장공사	의류시설(병원), 도장	건축	시공	
2019. 05. 15 (146일)	영남대학교, 팔공건설(주)		건축시공	소장	
			현장대리인		

I.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공장	276 일
공장, 도장	15 일
관개	91 일
교량	214 일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장	86 일
교육연구시설(학교), 미장, 발수	74 일

건축/건축시공	1,371 일
토목/도로및공항	244 일
토목/토목시공	3,082 일
토목/(미기재)	5,621 일
인정일수 합계	10,318 일

구 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인정분야 확인	(건설기술인협회) 기술경력 내 직무분야·전문분야 확인
③ 인정일수 확인	전문분야별 참여기간(인정일), 인정일수 확인
④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조회용)

Page : 1/4

①이 증명서는 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10월03일 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3/4 Pages

주요 경력				회원번호 (10106043)	
③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② 기술부문	직위	비고
	발주자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전문분야		
2014.07.01 ~ 2015.06.30 (365일)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5권역)	댐	기계	사원	
	한국수자원공사	유지관리	일반산업기계		

④ 4/4 Pages

참 여 일 수		회원번호 (10106043)	
기술부문 참여일수 현황		③ 전문분야 참여일수 현황	
광업	0 일	가스	0 일
기계	1,157 일	금형	0 일
산업	0 일	대기관리	0 일
선박	0 일	비파괴검사	0 일
설비	0 일	산업안전	0 일
원자력	0 일	설비	0 일
정보통신	0 일	소방방재	0 일
항공우주	0 일	소음진동	0 일
화학	0 일	융합	0 일
환경	0 일	일반산업기계	1,157 일
참여일수 합계	1,157 일	자원관리	0 일
		정보통신	0 일
		조선	0 일
		차량	0 일
		체계공학	0 일
		프로젝트매니지먼트	0 일
		항공	0 일
		화공	0 일
		참여일수 합계	1,157 일

구 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인정분야 확인	(엔지니어링협회) 주요경력 내 기술부문-전문분야 확인
③ 인정일수 확인	전문분야별 참여기간(참여일), 참여일수 확인
④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협회발급 경력증명서 예시 (전력기술인 경력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① (앞쪽) 1 / 4 Page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2020년 06월 17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회원번호		등	급
발행번호			

(뒤쪽) 2 / 4 Page

전력기술근무경력 [총괄]

성명	③	참여사업명	②	④	비고
근무처명	참여기간 (참여일수)	발주자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근무형태 직위
(주)포스코	1980.01.07 1984.03.01 (1,516일/1,516일)	설비관리부공무설계과	전기 산업시설	기타전력기술 전기기술	현장 기사

구분	유의사항
① 증명서 발급	협회 발급 직인 날인,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인정분야 확인	(전기기술인협회) 기술근무경력 내 직무분야·참여분야 확인
③ 인정일수 확인	참여분야별 참여기간(참여일) 확인
④ 증명서 제출	증명서는 모든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위는 예시이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3-3] 건설기술관련 가점 인정 관련학과

- 관련 학교(학과 명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해당자에 한함, 사본 첨부)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에 붙임3-3에 명시된 단어들이 명시된 학과만
 관련학과로 인정(고등학교 이상)

분야	관련학과
토목	토목, 건설(토목), 측량, 공간정보, 지리정보, 도시정보(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 공업교육(토목), 철도보선, 광산공학, 이학(토목), 자원공학, 농공학, 지질, 지적, 토지정보, 토목환경 관련학과
기계	기계, 계측, 냉동, 용접, 배관, 선박, 조선, 자동차, 금형, 기관, 항공, 메카트로닉스공학, 생산자동화공학, 시스템공학, 기체기관공학, 제조공학, 공업교육(기계), 배관용접, 금형공구, 건축설비, 철도차량 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건설지원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